



의 안 번 호	제32호
회 의 연 월 일	2022. 2. 21. (제482회 회의)

심의
·
의결
사항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 출 부 서	경 찰 청 (경비국)
제출연월일	2022. 2. 9.

작전계장, 대테러과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보수를 2021년 보수보다 1.4퍼센트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러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의 봉급을 감안하여 정하고 있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 완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봉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표
(제9조제1항 관련)

(월 지급액, 단위: 원)

재직기간 호봉	15년 미만	15년 이상 23년 미만	23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1	1,686,500	-	-	-
2	1,732,900	-	-	-
3	1,816,000	-	-	-
4	1,904,000	-	-	-
5	1,993,000	-	-	-
6	2,083,900	-	-	-
7	2,171,000	-	-	-
8	2,254,800	-	-	-
9	2,335,200	-	-	-
10	2,412,500	-	-	-
11	2,486,200	-	-	-
12	2,559,300	-	-	-
13	2,629,600	2,774,700	-	-
14	2,697,800	2,845,600	-	-
15	2,763,000	2,913,800	-	-
16	2,826,100	2,979,700	-	-
17	2,887,800	3,041,100	-	-
18	2,945,200	3,100,700	-	-
19	3,001,700	3,158,000	3,476,400	-
20	3,055,400	3,212,500	3,535,000	-
21	3,106,000	3,264,600	3,590,900	-
22	3,154,900	3,314,600	3,643,600	-
23	3,201,400	3,362,200	3,694,800	-
24	3,246,000	3,408,100	3,743,200	4,008,000
25	3,288,300	3,451,800	3,789,100	4,055,800
26	3,326,900	3,494,000	3,833,200	4,099,600
27	3,360,000	3,529,300	3,870,300	4,137,100
28	3,391,800	3,563,200	3,905,000	4,173,200
29	3,422,600	3,595,300	3,938,500	4,207,200
30	3,452,600	3,626,400	3,970,600	4,239,500
31	3,481,800	3,656,600	4,000,700	4,270,1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표 (제9조제1항 관련) (월 지급액, 단위: 원)					[별표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표 (제9조제1항 관련) (월 지급액, 단위: 원)				
재직 기간 호봉	15년 미만	15년 이상 23년 미만	23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재직 기간 호봉	15년 미만	15년 이상 23년 미만	23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1	1,659,500	-	-	-	1	1,686,500	-	-	-
2	1,705,200	-	-	-	2	1,732,900	-	-	-
3	1,787,000	-	-	-	3	1,816,000	-	-	-
4	1,873,600	-	-	-	4	1,904,000	-	-	-
5	1,961,200	-	-	-	5	1,993,000	-	-	-
6	2,050,600	-	-	-	6	2,083,900	-	-	-
7	2,136,300	-	-	-	7	2,171,000	-	-	-
8	2,218,800	-	-	-	8	2,254,800	-	-	-
9	2,297,900	-	-	-	9	2,335,200	-	-	-
10	2,373,900	-	-	-	10	2,412,500	-	-	-
11	2,446,500	-	-	-	11	2,486,200	-	-	-
12	2,518,400	-	-	-	12	2,559,300	-	-	-
13	2,587,600	2,730,400	-	-	13	2,629,600	2,774,700	-	-
14	2,654,700	2,800,200	-	-	14	2,697,800	2,845,600	-	-
15	2,718,800	2,867,300	-	-	15	2,763,000	2,913,800	-	-
16	2,780,900	2,932,100	-	-	16	2,826,100	2,979,700	-	-
17	2,841,700	2,992,500	-	-	17	2,887,800	3,041,100	-	-
18	2,898,100	3,051,200	-	-	18	2,945,200	3,100,700	-	-
19	2,953,700	3,107,500	3,420,800	-	19	3,001,700	3,158,000	3,476,400	-
20	3,006,600	3,161,200	3,478,400	-	20	3,055,400	3,212,500	3,535,000	-
21	3,056,400	3,212,400	3,533,500	-	21	3,106,000	3,264,600	3,590,900	-
22	3,104,500	3,261,600	3,585,400	-	22	3,154,900	3,314,600	3,643,600	-
23	3,150,200	3,308,500	3,635,700	-	23	3,201,400	3,362,200	3,694,800	-
24	3,194,100	3,353,800	3,683,300	3,943,900	24	3,246,000	3,408,100	3,743,200	4,008,000
25	3,235,800	3,396,600	3,728,500	3,991,100	25	3,288,300	3,451,800	3,789,100	4,055,800
26	3,273,700	3,438,200	3,771,900	4,034,100	26	3,326,900	3,494,000	3,833,200	4,099,600
27	3,306,300	3,472,900	3,808,500	4,070,900	27	3,360,000	3,529,300	3,870,300	4,137,100
28	3,337,600	3,506,200	3,842,600	4,106,500	28	3,391,800	3,563,200	3,905,000	4,173,200
29	3,367,900	3,537,900	3,875,600	4,140,000	29	3,422,600	3,595,300	3,938,500	4,207,200
30	3,397,400	3,568,500	3,907,100	4,171,800	30	3,452,600	3,626,400	3,970,600	4,239,500
31	3,426,200	3,598,200	3,936,700	4,201,800	31	3,481,800	3,656,600	4,000,700	4,270,100

〈 의안 소관 부서명 〉

대테러과	
연 락 처	02 - 3150 - 1226